

민·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

2026년도 민·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6월

방위사업청장·국방기술품질원장

□ 사업목적

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표준화하는 사업

□ 공모사항

제26-1회 민·군규격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른 2026년 착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공모

1. 대상과제

과제번호	과제명
26-DU-UNI-01	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
26-DU-UNI-02	AI 적용 체계 안전설계기획 프레임워크 표준화 연구
26-DU-UNI-03	우주용 PCB 표준화 연구

* 선정대상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의한 기술료 미징수 대상임

* 기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참조

【붙임3】

2. 자격요건

○ 신청자격

- 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의

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신청

- 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 합의 필요
- 기업부설연구소, 민간생산기술연구소,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과제 참여

○ 참여제한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비적용)

㉠ 부도, 법정관리인

㉡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(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)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% 이하인 기업)

※ 단, ㉡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는 예외(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)

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

㉣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기업

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

·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/주관연구개발 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

-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

○ 우대사항

-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가점 3%)

3. 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: ① 이메일 신청 후, ② 우편 또는 직접 제출

* 제출처

① 이메일 : std20@dtaq.re.kr

② 방문(우편) : (34327)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 70, (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)
표준연구실 민·군규격표준화사업 담당 (042-251-5472)

○ 접수기간 : 2026. 7. 30.(목) 17:00 까지 도착분에 한함

* 기한 내 이메일 제출과 우편(방문) 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

○ 제출서류(이메일)

- 연구개발계획서(hwp. 또는 hwp. 파일) 【붙임4】
-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

○ 제출서류(우편 및 방문)

-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, 사본 10부
-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공통)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 각 1부
- (해당시)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해당시)기타 증명서류 사본 각 1부(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참조)

4. 계획서 작성 참고사항

○ 연구개발비 구성

-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

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

-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%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
-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음

영리기관 유형	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	기관부담연구개발비(민간부담금) 중 현금 부담 비율
중소기업 ¹⁾	75% 이내 (연차별)	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중견기업 ²⁾	70% 이내 (연차별)	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공기업 ³⁾ , 대기업 ⁴⁾	50% 이내 (연차별)	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-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- 2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
- 4) 위 1)부터 3)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※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」 제26조제4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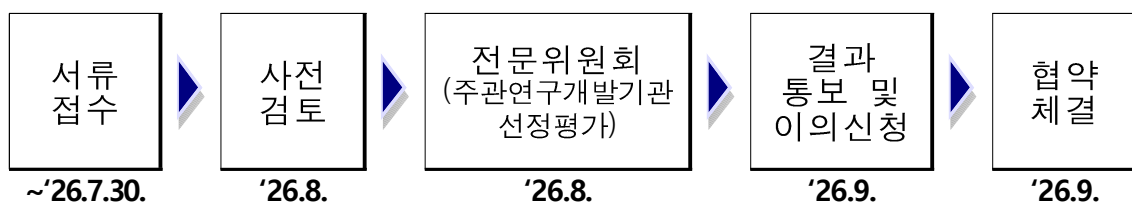
- 중소·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(만 18세~34세)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 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

○ 연구개발계획서 작성·제출 시 주의 사항

-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(과제책임자 3개 이내, 참여연구원 5개 이내)
- 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1항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 활용
- 전산(이메일)제출 시 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
-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
-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
-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,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

5. 추진절차 및 평가방법

○ 추진절차 및 일정



*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전문위원회는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」 적용

○ 평가방법

-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,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

- 연구수행의 목표, 연구내용의 적절성, 추진체계, 활용성,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검토
- 전문가 패널평가로 발표→질의응답→내부토론(발표자 퇴장) 순으로 진행
- 전문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하며,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판정
 - * 단독으로 제안한 과제인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, 70점 미만 탈락
 - * 2개 이상 기관이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미만 탈락,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
- 평가대상 중 선정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계획 등을 보고 후 추진
 - * **평가기준 : 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[서식 제19호]**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- 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- (방위사업청)민·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(국방기술품질원)민·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

※ 위 법령과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및 국방기술품질원(www.dtaq.re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기타사항

-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민·군규격표준화사업 당해 예산 및 과제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내용의 과제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중복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문의처 : 국방기술품질원 표준연구실 042-251-5472